## 검 토 보 고 서

## I.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

1. 세입에산결산 $/ 3$
2. 세출예산결산 $/ 15$

가. 정책관리실 소관 / 15
나. 균형발전본부 소관 /20

## II.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

1.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/23
2.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 $/ 26$
3.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 $/ 30$
III.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
4.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$/ 36$

## 2006회게연도 일반회게 세입결산

## I. 결산개요

## 1.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| 세 목 | 예산현액 <br> (1) | 징 셜정액 | 수납액 <br> (3) | 비율 (\%) |  | $\begin{array}{\|l\|l} \hline \text { 결손 } \\ \text { 처분 } \end{array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미수납액 } \\ & \text { (이월액 } \end{aligned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초과세입 } \\ & \text { (3) - (1) } \end{align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(3)/1) | (3) /2) |  |  |  |
| 합 계 | 1,987,261 | 2,101,681 | 2,074,347 | 104.4 | 98.7 | 5,370 | 21.964 | 87,086 |
| 지 방 세 | 458,270 | 566,126 | 540,058 | 117.8 | 95.4 | 5,212 | 20,856 | 81,788 |
| 취 득 세 | 182,380 | 216,757 | 211,392 | 115.9 | 97.5 | 427 | 4,938 | 29,012 |
| 등 록 세 | 161,450 | 194,408 | 193,737 | 120.0 | 99.7 | 241 | 430 | 32,287 |
| 면 허 세 | 2,420 | 2,449 | 2,344 | 96.9 | 95.7 | 3 | 102 | $\triangle 76$ |
| 공동시설세 | 11,496 | 14,630 | 13,835 | 120.3 | 94.6 | 124 | 671 | 2,339 |
| 지역개발세 | 2,534 | 2,905 | 2,895 | 114.2 | 99.7 |  | 10 | 361 |
| 지방교육세 | 88,350 | 108,688 | 105,826 | 119.8 | 97.4 | 138 | 2,724 | 17,476 |
| 과년도수입 | 9,640 | 26,289 | 10,029 | 104.0 | 38.1 | 4,279 | 11,981 | 389 |
| 세외수입 | 261,164 | 267,876 | 266,610 | 102.1 | 99.5 | 158 | 1,108 | 5,446 |
| 경 상ㅈ정 | 20,071 | 24,506 | 24,389 | 121.5 | 99.5 | 1 | 116 | 4,318 |
| ㅇㅣㅣ 시 정 | 241,093 | 243,370 | 242,221 | 100.5 | 9.5 | 157 | 992 | 1,128 |
| 지방교부세 | 383,614 | 390,937 | 390,937 | 101.9 | 100.0 | 0 | 0 | 7,323 |
| 국고보조금 | 851,713 | 848,142 | 848,142 | 100.1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3,571$ |
| 지 방 채 | 32,500 | 28,600 | 28,600 | 88.0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3,900$ |

## 1-1. 세외수입 결산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 | 예산현액 <br> (1) | 징 수 (2) | 수납액 <br> (3) | 비율 (\%) |  | $\begin{gathered} \text { 결손 } \\ \text { 처눈 } \\ \text { (4) } \end{gathered}$ | 미수납액 <br> (5) | 초과세입(3) - (1)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(3) /1) | (3) /2) |  |  |  |
| 합 계 | 261,164 | 267,876 | 266,610 | 102.1 | 99.5 | 158 | 1,108 | 5,446 |
| 경 상 적 | 20,071 | 24,506 | 24,389 | 121.5 | 99.5 | 1 | 116 | 4,318 |
| 稆산임대 | 456 | 625 | 606 | 132.9 | 97.0 | - | 19 | 150 |
| 사 수 용 룝 | 3,575 | 3,782 | 3,687 | 103.1 | 97.5 | - | 95 | 112 |
| 수숫 룡 | 2,074 | 2,394 | 2,394 | 115.4 | 100.0 | - | - | 320 |
| 사업수입 | 508 | 572 | 569 | 112.0 | 99.5 | - | 3 | 61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징수교부금 } \\ & \text { 수 }{ }_{1}^{\prime} \end{aligned}$ | 4,613 | 4,641 | 4,641 | 100.6 | 100.0 | - | - | 28 |
| 이자수입 | 8,845 | 12,492 | 12,492 | 141.2 | 100.0 | - | - | 3,647 |
| 임 시 적 | 241,093 | 243,370 | 242,221 | 100.5 | 99.5 | 157 | 992 | 1,128 |
| 재산매ㄱㅏㅏ | 694 | 708 | 699 | 100.7 | 98.7 | - | 9 | 5 |
| 순 세 계 | 116,996 | 116,996 | 116,996 | 100.0 | 100.0 | - | - | - |
| 이 월 금 | 94,583 | 94,583 | 94,583 | 100.0 | 100.0 | - | - | - |
| 전 입 금 | 2,589 | 2,589 | 2,589 | 100.0 | 100.0 | - | - | 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융 자 금 } \\ & \text { 원금수입 } \end{aligned}$ | 3,000 | 3,341 | 3,341 | 111.4 | 100.0 | - | - | 341 |
| 부 담 금 | 9,238 | 9,239 | 9,238 | 100.0 | 100.0 | - | 1 | - |
| 잡 수 입 | 13,893 | 14,681 | 14,591 | 105.0 | 99.4 | 1 | 89 | 698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지난년도이빈 } \\ & \text { 수 } \end{aligned}$ | 100 | 1,233 | 184 | 184.0 | 14.9 | 156 | 893 | 84 |

## 2. 결손처분

(단위 : 천원)

| 과 목 | 합 계 | 무재산 | 행방불명 | 시효완성 | 공매시배당무 | 기타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합 계 | 5,369,653 | 4,026,660 | 76,291 | 246,955 | 568,890 | 450,857 |
| 지 방 세 | 5,212,284 | 3,962,944 | 73,757 | 156,308 | 568,890 | 450,385 |
| 취 득 세 | 427,350 | 323,338 | - | - | 20,584 | 83,428 |
| 등 록 세 | 240,733 | 225,477 | - | - | 4,560 | 10,696 |
| 면 허 세 | 2,984 | 2,365 | 6 | - | 307 | 306 |
| 공동시설세 | 123,772 | 80,544 | 659 | - | 15,404 | 27,165 |
| 지역개발세 | 104 | 104 | - | - | - | - |
| 지방교육세 | 137,880 | 113,544 | 1,479 | - | 8,229 | 14,628 |
| 과년도수입 | 4,279,461 | 3,217,572 | 71,613 | 156,308 | 519,806 | 314,162 |
| 세외수입 | 157,369 | 63,716 | 2,534 | 90,647 | - | 472 |
| 도로사용료 | 620 | 620 | - | - | - | 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과태료 밈 } \\ & \text { 빔 칙 츰 } \end{aligned}$ | 1,000 | - | 1,000 | - | - | - |
| 과년도수입 | 155,749 | 63,096 | - | 90,647 | - | 472 |

주) 기타는 소액으로 경매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
3. 미수납액
(단위 : 천원)

| 과 목 | 합 계 | 거소불명 | 무재산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고질적 } \text { 납 } \end{aligned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소송계류및 } \\ & \text { 재산압류중 } \end{aligned}$ | 기타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합 계 | 21,964,483 | 1,732,462 | 1,956,323 | 6,489,918 | 7,589,271 | 4,196,509 |
| 지 방 세 | 20,856,250 | 1,694,512 | 1,885,379 | 6,012,176 | 7,278,619 | 3,985,564 |
| 취 득 세 | 4,937,881 | 301,599 | 294,803 | 1,495,439 | 1,849,036 | 997,004 |
| 등 록 세 | 430,068 | 19,328 | 88,831 | 142,310 | 122,465 | 57,134 |
| 면 허 세 | 102,192 | 10,011 | 16,374 | 32,930 | 17,136 | 25,741 |
| 공동시설세 | 670,561 | 45,760 | 66,155 | 164,982 | 209,952 | 183,712 |
| 지역개발세 | 10,305 | 892 | 1,937 | 3,936 | 887 | 2,653 |
| 지방교육세 | 2,723,970 | 192,604 | 223,668 | 911,393 | 647,020 | 749,285 |
| 과년도수입 | 11,981,273 | 1,124,318 | 1,193,611 | 3,261,186 | 4,432,123 | 1,970,035 |
| 세외수입 | 1,108,233 | 37,950 | 70,944 | 477,742 | 310,652 | 210,945 |
| 경상적세외수입 | 116,523 | 6,796 | 5,414 | 46,744 | 27,167 | 30,402 |
| 공유재신임대료 | 19,276 | 665 | 564 | 11,720 | 1,074 | 5,253 |
| 도로사용료 | 55,569 | 5,375 | 3,937 | 22,972 | 15,500 | 7,785 |
| 하천사용료 | 39,157 | 756 | 913 | 9,532 | 10,593 | 17,363 |
| 사업장생산수입 | 2,520 | - | - | 2,520 | - |  |
| 예금이자수입 | 1 | - | - | - | - | 1 |
| 임시적세외수입 | 991,710 | 31,154 | 65,530 | 430,998 | 283,485 | 180,543 |
| 국유재산매각 | 8,840 |  |  | 8,840 |  |  |
| 일반부담금 | 528 | - |  | 528 |  |  |
| 변상금 | 7,049 | - | - | 6,716 | - | 333 |
| 위약금 | 2,772 | - | - | 2,772 | - |  |
| 과태료및범칙금 | 64,466 | 2,875 | 10,600 | 29,491 | 16,500 | 5,000 |
| 시도비반환금 | 6,135 | - | - | - | - | 6,135 |
| 기타잡수입 | 8,543 | - | 4,078 | - | 3,423 | 1,042 |
| 과년도수입 | 893,377 | 28,279 | 50,852 | 382,651 | 263,562 | 168,033 |

주) 기타는 처납처분 진행중, 납기 미도래 등

## 4. 세목별 세수구성비

(단위 : 백만원)

| 세 목 | 2006년 |  | 2005년 |  | 2004년 |  | 비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수납액 | \% | 수납액 | \% | 증감액 | \% |  |
| 합 계 | 2,074,347 | 100.0 | 1,750,142 | 100.0 | 1,856,975 | 100.0 |  |
| 자주재원 | 806,668 | 38.9 | 700,822 | 40.0 | 651,362 | 35.1 |  |
| 지 방 세 | 540,058 | 26.0 | 411,528 | 23.5 | 388,025 | 20.9 |  |
| 취 득 세 | 211,392 | 10.2 | 144,062 | 8.2 | 121,016 | 6.5 |  |
| 등 록 세 | 193,737 | 9.3 | 154,252 | 8.8 | 146,757 | 7.9 |  |
| 면 허 세 | 2,344 | 0.1 | 2,227 | 0.1 | 2,188 | 0.1 |  |
| 공동시설세 | 13,835 | 0.7 | 11,477 | 0.7 | 12,419 | 0.7 |  |
| 지역개발세 | 2,895 | 0.1 | 2,610 | 0.1 | 2,918 | 0.2 |  |
| 지방교육세 | 105,826 | 5.1 | 90,570 | 5.2 | 94,608 | 5.1 |  |
| 과년도수입 | 10,029 | 0.5 | 6,330 | 0.4 | 8,119 | 0.4 |  |
| 세외수입 | 266,610 | 12.9 | 289,294 | 16.5 | 263,337 | 14,2 |  |
| 경 상 정 세외수입 | 24,389 | 1.2 | 20,929 | 1.2 | 21,308 | 1.2 |  |
| 임 시 ㅈㅓㅓ | 242,221 | 11.7 | 268,365 | 15.3 | 242,029 | 13.0 |  |
| 의존재원 | 1,239,079 | 59.7 | 1,038,319 | 59.3 | 1,081,946 | 58.3 |  |
| 지방교부세 | 390,937 | 18.8 | 361,573 | 20.7 | 298,418 | 16.1 |  |
| 지방양여금 | - | - | - | - | 123,172 | 6.6 |  |
| 국고보조금 | 848,142 | 40.9 | 676,746 | 38.7 | 660,356 | 35.6 |  |
| 지 방 채 | 28,600 | 1.4 | 11,000 | 0.6 | 123,667 | 6.6 |  |

5. 전년도 결산 대비
(단위 : 백만원)

| 세 |  | 예산현액 <br> (1)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징 수 } \\ & \text { 결정액 } \end{aligned}$ | 수납액 <br> (3) | 비율 (\%) |  | $\begin{array}{\|l} \hline \begin{array}{l} \text { 결손 } \\ \text { (4, } \\ 4 \end{array} \end{array}$ | 미수납액 <br> (5) | 초과세입(3) - (1)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 | (3) /1) | (3) /2) |  |  |  |
| 합 <br> 계 | '06년 | 1,987,261 | 2,101,681 | 2,074,347 | 104.4 | 98.7 | 5,370 | 21,964 | 87,086 |
|  | '05년 | 1,663,704 | 1,781,167 | 1,750,142 | 105.2 | 98.3 | 5,569 | 25,456 | 86,438 |
|  | \% | 19.4 | 12.3 | 18.5 | - | - | $\triangle 3.6$ | $\triangle 13.7$ | 0.7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지 } \\ & \text { 방 } \\ & \text { 세 } \end{aligned}$ | '06년 | 458,270 | 566,126 | 540,058 | 117.8 | 95.4 | 5,212 | 20,856 | 81,788 |
|  | '05년 | 334,540 | 441,126 | 411,529 | 123.0 | 93.3 | 5,471 | 24,126 | 76,989 |
|  | \% | 37.0 | 28.3 | 31.2 | - | - | $\triangle 4.7$ | $\triangle 13.6$ | 6.2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세 } \\ & \text { 외 } \\ & \text { 수 } \\ & \text { 입 } \end{aligned}$ | '06년 | 261,164 | 267,876 | 266,610 | 102.1 | 99.5 | 158 | 1,108 | 5,446 |
|  | '05년 | 285,988 | 290,722 | 289,294 | 101.2 | 99.5 | 98 | 1,330 | 3,306 |
|  | \% | $\triangle 8.7$ | 67.9 | 67.8 |  |  | 61.2 | $\triangle 16.7$ | 64.7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지 } \\ & \text { 방 } \\ & \text { 교 } \\ & \text { 베 } \\ & \text { 상 } \end{aligned}$ | '06년 | 383,614 | 390,937 | 390,937 | 101.9 | 100.0 | 0 | 0 | 7,323 |
|  | '05년 | 355,620 | 361,573 | 361,573 | 101.7 | 100.0 | 0 | 0 | 5,953 |
|  | \% | 7.9 | 8.1 | 8.1 |  |  |  |  | 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보 } \\ & \text { 조 } \\ & \text { 금 } \end{aligned}$ | ‘06년 | 851,713 | 848,142 | 848,142 | 99.6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3,571$ |
|  | '05년 | 676,256 | 676,746 | 676,746 | 100.1 | 100.0 | 0 | 0 | 490 |
|  | \% | 25.9 | 25.3 | 25.3 |  |  |  |  | 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지 } \\ & \text { 방 } \\ & \text { 채 } \end{aligned}$ | '06년 | 32,500 | 28,600 | 28,600 | 88.0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3,900$ |
|  | '05년 | 11,300 | 11,000 | 11,000 | 97.3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300$ |
|  | \% | 87.6 | 160.0 | 160.0 |  |  |  |  |  |

## 2. 세입결산 분석

○ 2006 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$19.4 \%$ 증가한 1 조 9,873 억원이며,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$18.0 \%$ 증가한 2조 1,017억원,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$18.5 \%$ 가 증가한 2 조 744 억원이며, 세입예산의 $4.4 \%$ 에 해당하는 871 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음

○ 징수결정액 2조 1,017억원의 $98.7 \%$ 에 해당하는 2조 774억원이 수납되었고,
$0.3 \%$ 에 해당하는 54 억원이 불납결손처분되었으며,
$1.0 \%$ 해당하는 219 억원이 미수납되었음.

일반회계 세입결산
(단위 : 억원/\%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(1) | 징 술정액 (2) | 수납액 <br> (3) | 비율 (\%) | 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결손 } \\ & \text { 처눈 } \end{aligned}$ | 이월액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초과세입 } \\ & \text { (3) - (1) } \end{align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(3) /1) | (3) /2) |  |  |  |
| 2006년 | 19,873 | 21,017 | 20,744 | 104.4 | 98.7 | 54 | 219 | 871 |
| 2005년 | 16,637 | 17,812 | 17,501 | 105.2 | 98.2 | 56 | 255 | 864 |
| 증감율 | 19.4 | 18.0 | 18.5 | - | - | $\triangle 3.6$ | $\triangle 14.1$ | 0.8 |

$\bigcirc$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$0.3 \%$ 에 해당하는 53 억 7,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$3.6 \%$ 가 감소하였으며, 사유별로는 무재산 40 억 2,700 만원, 행방불명 7,600만원, 시효완성 2 억 4,700 만원,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5 억 6,900만원, 기타 4 억 5,100 만원임.

결손처분 사유별 현황
(단위 : 백만원)

| 과 목 | 합 계 | 무재산 | 행방불명 | 시효완성 | 공매심 <br> 배당무 | 기타 |
| :---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
| 합 계 | 5,370 | 4,027 | 76 | 247 | 569 | 451 |
| 지 방 세 | 5,212 | 3,963 | 74 | 156 | 569 | 450 |
| 세외수입 | 158 | 64 | 2 | 91 | 0 | 1 |

$\bigcirc$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$1.0 \%$ 에 해당하는 219 억 6,400 만원으로 전년대비 $14.1 \%$ 가 감소하였으며, 사유별로는 거소 불명 17 억 3,200 만원, 무재산 19 억 5,600 만원, 고질적 체납 64 억 9,000만원,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진행중인 것이 75 억 8,900 만원, 기 타 41 억 9,700만원임.

##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과 목 | 합 계 | 징수유예 | 거소불명 | 무재산 | 고질적 갑 <br> 체 | 소송계류민 <br> 잡류충 | 기타 |
| :---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
| 합 계 | 21,964 | - | 1,732 | 1,956 | 6,490 | 7,589 | 4,197 |
| 지 방 세 | 20,856 | - | 1,694 | 1,885 | 6,012 | 7,279 | 3,986 |
| 세외수입 | 1,108 | - | 38 | 71 | 478 | 310 | 211 |

○ 초과세입은 870 억 8,600 만원으로 전년대비 $0.8 \%$ 가 증가하였으며 자 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초과징수로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미수렁분이며, 국고보조금은 35억 7,100만원이 미교부되었으 며, 지방채는 39 억원이 차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공사진도에 따 라 차입시기를 조정한 것임.

## 초과세입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초 과 } \\ & \text { 세 입 } \end{aligned}$ | 자체수입 |  |  | 의존수입 |  |  | 지방채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소계 | 지방세 | 세외수입 | 소계 | 교부세 | 보조금 |  |
| 2006년 | 87,086 | 87,234 | 81,788 | 5,446 | 3,752 | 7,323 | $\triangle 3,571$ | $\triangle 3,900$ |
| 2005년 | 86,438 | 80,295 | 76,989 | 3,306 | 6,443 | 5,953 | 490 | $\triangle 300$ |

○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수구성비율은 자체수입 $38.9 \%$, 의존수입 $59.7 \%$, 지방채 $1.4 \%$ 로 의존수입 비중이 2001 년도부터 증 가 추세에 있음.

세수구성비
(단위 : 억원)

| 세 목 | 2005 년 |  | 2004년 |  | 2003년 |  | 2002년 |  | 2001년 |  |
| :---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수납액 | $\%$ | 수납액 | $\%$ | 수납액 | $\%$ | 수납액 | $\%$ | 수납액 | $\%$ |
| 합 계 | 20,744 | 100.0 | 17,501 | 100.0 | 18,570 | 100.0 | 16,968 | 100.0 | 16,104 | 100.0 |
| 자체수입 | 8,067 | 38.9 | 7,008 | 40.1 | 6,513 | 35.1 | 7,510 | 44.3 | 5,278 | 32.7 |
| 의존수입 | 12,391 | 59.7 | 10,383 | 59.3 | 10,820 | 58.3 | 9,458 | 55.7 | 10,554 | 65.6 |
| 지 방 채 | 286 | 1.4 | 110 | 0.6 | 1,237 | 6.6 | 0 | 0.0 | 272 | 1.7 |

## 3. 검토의견

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결 정액 대비 수납율 증가,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이 필요함.

## 가.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관한 검토

○ 2006회계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5,400억 5,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,582억 7,000만원보다 817억 8,800 만원이 초과징수되어 $17.8 \%$ 의 오 차율을 보이고 있음.

지방세 세수추계 오차
(단위 : 백만원/\%)

|  | 예산현액 |  | 수납액 | 초과 - 미달 <br> 세 입 액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2006년도 } \\ & \text { 오 차 율 } \end{aligned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2005년도 } \\ & \text { 오 차 율 } \end{align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구성비 |  |  |  |  |
| 지 방 세 | 458,270 | 100.0 | 540,058 | 81,788 | 17.8 | 23.0 |
| 보 통 세 | 346,250 | 68.8 | 407,473 | 61,223 | 17.7 | 30.5 |
| 취 득 세 | 182,380 | 29.9 | 211,392 | 29,012 | 15.9 | 44.0 |
| 등 록 세 | 161,450 | 38.2 | 193,737 | 32,287 | 20.0 | 20.6 |
| 면 허 세 | 2,420 | 0.7 | 2,344 | $\triangle 76$ | $\triangle 3.1$ | $\triangle 1.9$ |
| 목 적 세 | 102,380 | 29.6 | 122,556 | 20,176 | 19.7 | 5.7 |
| 공동시설세 | 11,496 | 3.6 | 13,835 | 2,339 | 20.3 | 5.4 |
| 지역개발세 | 2,534 | 0.7 | 2,895 | 361 | 14.2 | 6.8 |
| 지방교육세 | 88,350 | 25.3 | 105,826 | 17,476 | 19.8 | 7.2 |
| 과년도수입 | 9,640 | 1.6 | 10,029 | 389 | 4.0 | 21.8 |

$\bigcirc$ 이는 중앙정부의 국세 추계 오차율 $2.0 \%$ 와 비교하여 볼때 국세규 모의 $0.3 \%$ 에 해당하는 우리도의 지방세 오차율 $17.8 \%$ 는 세수추계 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.

국세 세수추계 오차와의 비교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지방세 (충청 북도) |  |  | 국 |  | 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세 (중앙정 부) |  |  |  |  |  |
|  | 예산현액 | 수납액 | 초과세입 | 예산현액 | 수납액 | 초과세입 |
| 2006 년 | 4,583 | 5,401 | $818(17.8 \%)$ | $1,353,336$ | $1,380,443$ | $27,107(2.0 \%)$ |
| 2005 년 | 3,345 | 4,115 | $770(23.0 \%)$ | $1,220,686$ | $1,177,957$ | $\triangle 42,729(3.5 \%)$ |

$\bigcirc$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예산편성과 도 재정운용을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의 범위나 세율수준의 조정, 도민의 지방세 부담 등을 예측하여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도세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근거임.

○ 세수추계의 오차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과소세입의 경우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추경편성과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을 약화 시킬 수 있고, 과다세입의 경우에는 도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 는 결과를 낳거나 필요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는 바,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세목의 추계오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전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.

○ 이와같이 세수추계 오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현행 세수추계방 식의 개선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으며, 더욱이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세수추계 모델 설정이 긴요한 실정임.

## 나.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징수관리에 관한 검토

○ 2006회계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5,661억 2,600만원에 대하 여 불납결손액은 52억 1,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8억 5,600만원 으로 이 둘을 합한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$4.6 \%$ 에 해당하는 260 억 6,800만원에 이르고 있음.

○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•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,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, 국내소비와 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세입증가율은 이를 충족할 정도로 기대하기 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.
$\bigcirc$ 이러한 과세환경은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도민의 조세부담율을 높 이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. 따라 서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탈세방지 정 책수단을 다양화하여 '넓은 세원'을 확보하는 등 세입기반을 강화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세입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
$\bigcirc$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에 있어서 는 은 닉재산의 추적조사 실시 등 무재산 확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결 손처분을 행한 후에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추적조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##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

가．정책관리실 소관
○ 2006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$41.6 \%$ 가 증가한 1,454 억 6，300만원으로 예산액의 $66.7 \%$ 인 967 억 7.000 만원을 집행하고，예산액의 $31.6 \%$ 인 459 억 2，200만원이 불용처 리 되었음

## 세출예산 집행실적

（단위 ：백만원／\％）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 액 C |  |  | 불용액 <br> D | B／A | D／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2006년 | 145，463 | 96，970 | 2，571 | 2，498 | 73 | 45，922 | 66.7 | 31.6 |
| 2005년 | 102，717 | 80，528 | 2，056 | 1，857 | 199 | 20，133 | 78.4 | 19.6 |
| 증감율 | 41.6 | 20.4 | 25.0 | 34.5 | 63.3 | 128.1 | － | － |

○ 세출예산 전용액은 2 건 3,500 만원으로 전용사유는＇고객만족 행정과 제 워크숍 추진＇과 ‘현장 혁신체험단 운영’에 필요한 소요액을 충당 하기 위해「민간행사보조위탁」목에서 「행사운영비」목으로 전용한 것 임．

## 세출예산 전용내역

（단위 ：천원）

| 과 목 |  | 예산액 | 전용금액 |  | 사 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항，세항 | 목 |  | 감액 | 증액 |  |
| 계 | 2건 |  | 35，000 | 5，000 |  |
| 내무행정 혁신분권 | 행사운영비 | 49，000 |  | 15，000 | 고객만족 행정과제 <br> 결과발표 워크숍 추진 |
| 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밉간해아 } \\ & \text { 보위탁 } \end{aligned}$ | 70，000 | 15，000 |  |  |
| 내무행정 혁신분권 | 행사운영비 | 49，000 |  | 20，000 | 현장 혁신체험단 운영 |
| 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밈간해아 } \\ & \text { 보위탁 } \end{aligned}$ | 70，000 | 20，000 |  |  |

O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 억 7，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 24

억 9,800만원, 사고이월이 2건 7,300만원임.
사고이월의 경우, 연구용역사업은 사전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'소요공기 부족'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.

## 세출예산 이월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사 업 명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이월 } \\ & \text { 금액 } \end{aligned}$ | 이 월 사 유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합 계 (9건) | 2,571 |  |
| 명시이월 (7건) | 2,498 |  |
|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 | 15 | 브랜드슬로건 개발 소요기간 부족 |
|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(NURI) | 315 | 사업기간 부족 <br> (3차년도 사업기간 : 06.7.1~07.6.30) |
| 종합홍보관 시설공사 | 1,494 | 절대공기 부족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성과관리(BSC) 시스템 } \\ & \text { 구축 컨설팅 } \end{aligned}$ | 300 | 절대공기 부족 |
| 고객관리시스템 (CRM) 구축 | 100 | 행자부 표준모델 보급시기 미확정 |
|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대본 | 74 | 06 조직개편 후 정비 추진 |
| 06정보화마을 조성사업 (정보콘텐츠 구축) | 200 | 정보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 |
| 사고이월 (2건) | 73 |  |
| 제3차 충북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 보완용역 | 21 | 소요공기 부족 |
|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 용역 | 52 | 소요공기 부족 |

○ 불용액 459억 2,200만원은 집행잔액 15 억 300만원, 집행사유 미발생 2,300 만원, 사업계획 변경•취소 9,700만원, 예산절감액 1 억 8,800 만 원, 기타 441억 1,100만원임
※ 기타는 예비비, 보조금 집행잔액임

## 불용액 사유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/\%)

| 불용액 | 집행잔액 | 집행사유 <br> 미 발 생 | 사ㅇㅓㅓㅂ 계 획 <br> 변경 추소 | 예산절감 | 기 타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45,922 | 1,503 | 23 | 97 | 188 | 44,111 |
| $(100.0)$ | $(3.27)$ | $(0.05)$ | $(0.21)$ | $(0.41)$ | $(96.06)$ |

○ 2006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

- 전용액이
$0.02 \%$ 인 3,500만원
- 이월액이
$1.77 \%$ 인 25억 7,100만원
- 불용액이
$31.57 \%$ 인 459억 2,200만원 발생하였음
$\triangleright$ 예산현액의 $33.7 \%$ 에 해당하는 485 억 2,800 만원을 변경집행 하였는 데,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440 억 9,400 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음.
$\triangleright$ 예비비를 제외한 정책관리실의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아래와 같음.

예비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집행실적
(단위 : 백만원/\%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 액 C |  |  | 불용액 <br> D | B/A | D/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예비비 제외 세출예산 | 101,369 | 96,970 | 2,571 | 2,498 | 73 | 1,828 | 95.7 | 1.8 |

## < 정책관리실 >

## 예산액 대비 $20 \%$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)

| 부서별 | 사 업 명 | 예산액 | 불용액 | 불용율 | 발 생 사 유 |
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
| 정 책 <br> 기획관실 | 의원상해보상금 | 10,000 | 10,000 | $100 \%$ | 지급사유 미발생 |

(단위 : 천원)

| 부서별 | 사 업 명 | 예산액 | 불용액 | 불용율 | 발 생 사 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정보통신 <br> 맘당관실충북 김싱보확의 개최 | 6,000 | 6,000 | $100 \%$ |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<br> 행사 미개최 |  |
| " |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 <br> 사이버이벤트 시상 | 2,000 | 2,000 | $100 \%$ |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<br> 행사 미개최 |
| " | 인터넷 도메인 취득 | 1,000 | 1,000 | $100 \%$ | 신규 도메인 취득사유 미발생 |

나. 균형발전본부 소관

○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13억 900만원으로 예산액의 $98.9 \%$ 인 902 억 7,800 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액의 $0.8 \%$ 인 7 억 2,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

## 세출예산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/\%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 액 C |  |  | 불용액 <br> D | B/A | D/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2006년 | 91,309 | 90,278 | 310 | 100 | 210 | 721 | 98.9 | 0.8 |

$\bigcirc$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•이용이 없음

○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건 3억 1,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 건 1 억원, 사고이월 1 건 2 억 1,000 만원 임

세출예산 이월내역
(단위 : 백만원)

| 사 업 명 | 이월 <br> 금액 | 이 월 사 유 |
| :---: | :---: | :--- |
| 합 계 (2건) | 310 |  |
| 명시이월 (1건) | 100 |  |
| 혁신도시개발 실시계획 <br> 수립 연구용역 | 100 | 절대공기 부족 |
| 사고이월 (1건) | 210 |  |
| 지능형 교통체계(ITS) <br> 지방계획 수립 | 210 | 소요공기 부족 |

○ 불용액 7억 2,100만원은 집행잔액 2억 9,500만원, 집행사유 미발생 2 억 700만원, 사업계획 변경•취소 2억원, 예산절감액 1,900만원임.

## 불용액 사유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/\%)

| 불용액 | 집행잔액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ㅈㅣㅣ행사유 } \\ & \text { 미 발 생 } \end{aligned}$ | 사 업 계 획 변경•취소 | 예산절감 | 기 타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$\begin{gathered} 721 \\ (100.0) \end{gathered}$ | $\begin{gathered} 295 \\ (40.9) \end{gathered}$ | $\begin{gathered} 207 \\ (28.7) \end{gathered}$ | $\begin{gathered} 200 \\ (27.7) \end{gathered}$ | $\begin{gathered} 19 \\ (2.7) \end{gathered}$ |  |

○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 건 2,469 만원이며 이중 2,437 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의 $1.3 \%$ 인 32 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. 지출사유는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임. 예비비 사용내역
(단위 : 천원)

| 세 항 | 지출결정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불용액 <br> C | C/A | 지출사유 |
| :---: | 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지역개발 | 24,690 | 24,370 | 320 | 1.3 |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<br> 서ㄴㅣㅣㅇㅔ 다른 사뭉뭄 등 |

○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

- 이월액이
0.34\%인 3억 1,000만원
- 불용액이
$0.79 \%$ 인 7억 2,100만원
- 예비비지출 결정액이
0.03\% 인
2,500만원으로

예산현액의 $1.6 \%$ 에 해당하는 10 억 5,600 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음.
< 균형발전본부 >

예산액 대비 $20 \%$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
(단위 : 천원)

| 부서별 | 사 업 명 | 예산액 | 불용액 | 불용율 | 발 생 사 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신도시 } \\ & \text { 건설 팀 } \end{aligned}$ | 일반경상수용비 | 20,000 | 5,287 | 26\% | 예산절감 및 혁신도시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사유 미발생 |
| " | 혁신도시 현황판 및 조감도 제작 | 5,000 | 5,000 | 100\% |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사유 미발싱 |
| " | 혁신도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물, 유인물 제작 | 10,000 | 10,000 | 100\% |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사유 미발셍 |
| 교통물류팀 | 오송분기역 조기건설관련 홍보물 제작 | 10,000 | 10,000 | 100\% | 기본계획 획정 및 설계발주가 지연되어 오송역 조감도등 홍보물 제작을 돗함 |
| " | 오송분기역 조기건설관련 일간지 홍보 | 24,000 | 24,000 | 100\% | 경부•호남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중앙 및 지빙의 빙송 신 문사에서 집중훙보와 병행되어 별도의 광고 필요성 감소 |
| " | 저상버스 도입보조 | 975,000 | 300,000 | 31\% |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사업포기 : 4내 <br> (보은, 옥친, 영동, 딘양) <br> - 농촌지역 도로 기반시설 미비로 <br> 저상버스 운힝 불합리 |
| " | 지능형교통체계(ITS) 지방계획 수립 | 300,000 | 90,000 | 30\% | 용역사업 입찰집행 진액 |
| " |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| 960,000 | 310,481 | 32\% |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사업이 예측량보다 적게 시행 |
| " |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| 72,000 | 22,071 | 31\% |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사업이 예측량보다 적게 시행 |
| 건축팀 | 건축상 시상금 및 살기좋은아파트 시상금 및 시상품 | 13,700 | 13,700 | 100\% |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한 기부 행위 조항에 해당하여 시상금 집헹 불가 |

## 지역개 발기금특별회계 결산

## 1. 결산개요

가. 세입 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예산현액 A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징 술 잭 } \\ & \text { 객 } \end{aligned}$ | 수납액 <br> C | 비율 (\%) |  | 미수납액 <br> B-C | $\begin{array}{\|c} \hline \text { 불ㄹㄹ솔액 } \\ \text { 난 } \end{array}$ | $\begin{gathered} \text { 초과 } \\ \text { 세입 } \\ \mathrm{E} \end{gather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C/A | C/B |  |  |  |
| 2006년 | 286,276 | 281,123 | 281,123 | 98.2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5,153$ |
| 2005년 | 321,651 | 321,803 | 321,803 | 100.1 | 100.0 | 0 | 0 | 152 |
| 증감액 | $\triangle 35,375$ | $\triangle 40,680$ | $\triangle 40,680$ | - | - | - | - | $\triangle 5,305$ |

나. 세출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지출원인 } \\ & \text { 행 위 액 } \end{aligned}$ | 지출액 | 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불용앵 } \\ & \text { (염) } \end{align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금액 | 비율(\%) |  |
| 2006년 | 286,276 | 139,922 | 139,922 | 48.9 | 146,354 |
| 2005년 | 321,651 | 152,874 | 152,874 | 47.5 | 168,777 |
| 증감액 | $\triangle 35,375$ | $\triangle 12,952$ | $\triangle 12,952$ | - | $\triangle 22,423$ |

다. 자금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수 익 |  |  | 지 출 | 창 이월액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전기이월액 | 수 입 | 계 |  |  |
| 2006년 | 168,929 | 112,194 | 281,123 | 139,922 | 141,201 |
| 2005년 | 213,854 | 107,949 | 321,803 | 152,874 | 168,929 |
| 증감액 | $\triangle 44,925$ | 4,245 | $\triangle 40,680$ | $\triangle 12,952$ | $\triangle 27,728$ |

라. 손익계산서
(단위 : 백만원)

| 계정과목 | 담 <br> $(2005$ 긴) | 전 기 <br> $(2004$ 년 $)$ | 증 감 | 비 고 |
| :---: | ---: | ---: | ---: | ---: |
| 경상이익 | 1,758 | $\triangle 851$ | 2,609 |  |
|  | 영업이익 | $\triangle 4,420$ | $\triangle 7,201$ | 2,781 |

주) 채무면제이익 : 채무소멸(상환기간 도래)로 발생한 부채감소액 마. 자산현황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자산총계 | 부 채 |  |  | 자 본 |  | 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소계 | 유동부채 | 고정부채 | 소계 | 자본금 | 잉여금 |
| 2006년 | 434,136 | 375,957 | 73,370 | 302,587 | 58,179 | 0 | 58,179 |
| 2005년 | 411,214 | 354,969 | 69,605 | 285,364 | 56,245 | 0 | 56,245 |
| 증감 | 22,922 | 20,988 | 3,765 | 17,223 | 1,934 | 0 | 1,934 |

## 2. 검토내역 및 의견

○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,862억 7,600 만원이며 수납액은 2,811억 2,300만원으로 $98.2 \%$ 의 수납실적을 나타 냄에 따라 51 억 5,300 만원이 감액 징수되었음.

○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$48.9 \%$ 인 1,399 억 2,200 만원을 지출하고 1,463 억 5,400 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과소세입을 차감한 1,412 억 100 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

○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실적은 기금융자금 증가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증가와 2002년부터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 율 하향조정(2001년까지 연6\%, 2002년~2003년 연 4\%, 2004년이후 연 $2.5 \%$ )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19 억 3,400 만원의 당기순이 익이 발생하였음.

기금융자금 현황
(단위 : 백만원)

| 2005년말 현재액 | 2006 년 융자액 | 2006 년 회수액 | 2006년말 현재액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235,962 | 74,400 | 21,613 | 288,749 |

$\bigcirc$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자금 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사장되고 있으므로 조성된 기금이 설치목 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요구됨.

##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

## 1. 결산개요

가. 세입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징 수 } \\ & \text { 결정액 } \\ & \text { B } \end{aligned}$ | 수납액 C | 비율 (\%) |  | 미수납액 <br> B-C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불 납 } \\ & \text { 결손액 } \\ & \text { D } \end{aligned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초과 } \\ & \text { 세입 } \\ & \mathrm{E}=\mathrm{C}-\mathrm{A} \end{align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C/A | C/B |  |  |  |
| 합 계 | 14,407 | 16,310 | 13,712 | 95.2 | 84.1 | 2,598 | 0 | $\triangle 695$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공공예금 } \\ & \text { 이자수입 } \end{aligned}$ | 300 | 212 | 212 | 70.7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88$ |
| 순 세 계 | 11,707 | 11,707 | 11,707 | 100.0 | 100.0 | 0 | 0 | 0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일 담 } \\ & \text { 붐 } \end{aligned}$ | 2,400 | 4,391 | 1,793 | 74.7 | 40.8 | 2,598 | 0 | $\triangle 608$ |

나. 세출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 액 C |  |  | 집행잔액$\mathrm{D}=\mathrm{B}-\mathrm{A}$ | B/A | D/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합 계 | 14,407 | 25 | 0 | 0 | 0 | 14,382 | 0.2 | 99.8 |
| 징수교부금 | 72 | 0 | 0 | 0 | 0 | 72 | 0.0 | 100.0 |
|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| 0 | 0 | 0 | 0 | 0 | 0 | 0.0 | 0.0 |
| 과오납금등 | 14,335 | 25 | 0 | 0 | 0 | 14,310 | 0.2 | 99.8 |

## 2. 검토내역 및 의견

○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•세출 예 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$21.1 \%$ 가 감소한 144 억 700 만원으로

-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$113.2 \%$ 에 해당하는 163 억 1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$84.1 \%$ 에 해당하는 137 억 1,200 만원이 수 납되었으며, 징수결정액의 $15.9 \%$ 에 해당하는 25 억 9,800 만원이 미 수납되었음.

세입결산 내역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예 사낙ㄱㄱㄴ } \\ & \text { 현 } \end{aligned}$ |  | $\begin{gathered} \text { 수납액 } \\ \text { C } \end{gathered}$ | 비율 (\%) |  | 미수납액 <br> B-C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부룰산액 } \\ & \text { D } \end{aligned}$ | $\begin{array}{r} \text { 촛ㄱㄱㅇ } \\ \mathrm{E}=\mathrm{i},-\mathrm{A} \end{array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C/A | C/B |  |  |  |
| 2006년 | 14,407 | 16,310 | 13,712 | 95.2 | 84.1 | 2,598 | 0 | $\triangle 695$ |
| 2005년 | 18,259 | 20,382 | 18,243 | 99.9 | 89.5 | 2,139 | 0 | $\triangle 16$ |
| 증감율 | $\triangle 21.1$ | $\triangle 20.0$ | $\triangle 24.8$ | $\triangle 4.7$ | $\triangle 5.4$ | 21.5 | 0 |  |

-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$0.2 \%$ 인 2,500 만원을 지출하고, 집행잔액 143 억 8,200 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.

세출결산 내역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액 C |  |  | 집행잔액 D=B-A | B/A | D/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2006년 | 14,407 | 25 | 0 | 0 | 0 | 14,382 | 0.2 | 99.8 |
| 2005년 | 18,259 | 6,536 | 0 | 0 | 0 | 11,723 | 35.8 | 64.2 |
| 증감율 | $\triangle 21.1$ | $\triangle 99.6$ | 0 | 0 | 0 | 22.7 | - | - |

○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(학교용지부담금)의 경우 징수결정 액 대비 수납율이 $40.8 \%$ 로 극히 저조한 바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,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지출액이 전년도 65 억 3,600 만원에 비해 2006년도에는 2,500 만원이 지출되었음.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징수교부금에 있어 전년도에는 1 억원이 지출되었으 나 2006년에는 예산액 7,2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는 설명이 필요함.
[참고자료]

## 하교용준밤교

## $\square$ 설치목적

○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,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,
○ 대규모 개발지역안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김을 부과.징수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고자 「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」(1995.12.29) 제정 시행.

## $\square$ 부과기준

○ 공동주택 $=$ 분양가격 $\times 1000$ 분의 4
$\bigcirc$ 단독주택 $=$ 분양가격 $\times 1000$ 분의 7

## $\square$ 참고사항

○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(1995.12.29) 제정
O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(2005.3.31)

- 부담금을 개인(분양받은 자)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

○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(2005.3.24)

- 법령명칭 개정 및 부담금 납부자를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

○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 중

-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의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환급에 대비하여 교육청 전출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


##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

## 1. 결산개요

가. 세입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지이ㅅㅜㅜ } \\ & \text { 결정액 } \end{aligned}$ | $\begin{gathered} \text { 수납액 } \\ \text { C } \end{gathered}$ | 비율 (\%) |  | 미수납액 <br> B-C | $\begin{array}{\|l\|} \hline \text { 볼ㄹ손액 } \\ \text { 낭 } \end{array}$ | $\begin{array}{r} \text { 초과가 } \\ \mathrm{A시잉} \\ \mathrm{E}=\mathrm{A}-\mathrm{A} \end{array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C/A | C/B |  |  |  |
| 합 계 | 4,375 | 4,412 | 4,412 | 100.8 | 100.0 | 0 | 0 | 37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공공예금 } \\ & \text { 이자수밉 } \end{aligned}$ | 78 | 37 | 37 | 47.4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41$ |
| 숭이엥 여 금 | 1,897 | 1,897 | 1,897 | 100.0 | 100.0 | 0 | 0 | 0 |
| 이추담 밤 | 2,400 | 2,478 | 2,478 | 103.3 | 100.0 | 0 | 0 | 78 |

나. 세출결산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 액 C |  |  | 집행잔액$\mathrm{D}=\mathrm{B}-\mathrm{A}$ | B/A | D/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합 계 | 4,375 | 700 | 0 | 0 | 0 | 3,675 | 16.0 | 84.0 |
| 기타부담금 | 960 | 650 | 0 | 0 | 0 | 310 | 67.7 | 32.3 |
| 예 비 비 | 3,343 | 0 | 0 | 0 | 0 | 3,343 | - | 100.0 |
| 징수교부금 | 72 | 50 | 0 | 0 | 0 | 22 | 69.4 | 30.6 |

## 2. 검토내역 및 의견

○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• 세 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$2.3 \%$ 가 감소한 43 억 7,500만원으로

-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$100.8 \%$ 에 해당하는 44 억 1,200 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이 징수되었음.

세입결산 내역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예 산 } \\ & \text { 현 } \mathrm{H} \text { 객 } \end{aligned}$ | $\begin{array}{\|l\|} \text { 징 술 } \\ \text { 궁액 } \end{array}$B | 수납액C | 비율 (\%) |  | 미수납액 <br> B-C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불 납 } \\ & \text { 결손액 } \\ & \text { D } \end{aligned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초과 } \\ & \text { 세입 } \\ & \mathrm{E}=\mathrm{C}-\mathrm{A} \end{aligned}$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 | C/A | C/B |  |  |  |
| 2006년 | 4,375 | 4,412 | 4,412 | 100.8 | 100.0 | 0 | 0 | 37 |
| 2005년 | 4,479 | 2,734 | 2,734 | 61.0 | 100.0 | 0 | 0 | $\triangle 1,745$ |
| 증감율 | $\triangle 2.3$ | 61.4 | 61.4 | - | - | 0 | 0 | - |

-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$16.0 \%$ 인 7 억원을 지출하고, 집행잔액 36 억 7,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.


## 세출결산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<br> A | 지출액 <br> B | 이월 액 C |  |  | 집행잔액$\mathrm{D}=\mathrm{B}-\mathrm{A}$ | B/A | D/A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 | 계 | 명시 | 사고 |  |  |  |
| 2006년 | 4,375 | 700 | 0 | 0 | 0 | 3,675 | 16.0 | 84.0 |
| 2005년 | 4,479 | 837 | 0 | 0 | 0 | 3,642 | 18.7 | 81.3 |
| 증감율 | $\triangle 2.3$ | $\triangle 16.4$ | 0 | 0 | 0 | 0.9 | - | - |

$\bigcirc$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과목이 공공예금이자수입, 순세계잉여금, 일반부담금 3 개과목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$47.4 \%$ 의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입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,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$76 \%$ 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함.
［참고자료］

##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1조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＜개정 2007．1．19＞）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（이하＂부담금＂ 이라 한다）을 납부하여야 한다．＜개정 2002．12．30，2003．5．29，2007．1．19＞
1．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
2．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
3．「주택법」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「주택법」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
4．「주택법」에 의한 주택건설사업（다만，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，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）
5．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•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．다만，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．
6．기타 第 1 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 업
［전문개정 2001．1．29］

제11조의2（부담금의 감면）（1）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．＜개정 2002．12．30，2005．1．27，2007．1．19＞

1．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
2．제 11 조제 4 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 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「임대주택법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3．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78 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
4．제 11 조 각호의 사업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 2 조제 1 호 가목 내지 다목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•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
（2）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．이 경우 제 4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．＜개정 2002．12．30，2007．1．19＞
1．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
2．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
3．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
4．「도시계획법」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 11 조 각호의 사업
［본조신설 2001．1．29］

제 11 조의3（부담금의 산정기준）（1）제11조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．

1．제 11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$=\left\{1 \mathrm{~m}^{2}\right.$ 당 표준개발비 $\times$ 부과율 $\times$ 개발면적 $\times$（용적률 $\div 200)\}-$ 공제액
2．제 11 조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$=\left\{1 \mathrm{~m}^{2}\right.$ 당 표준건축비 $\times$ 부과 율 $\times$ 건축연면적 $\}$－공제액
（2）제 11 조제 6 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．
（3）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 분의 50 의 범위안에서，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 분의 10 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，시•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1 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，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，규모，특성 등에 따라 100 분의 50 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．
（4）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•조사비•설계비 및 일반관리 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，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「임대주택법」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．＜개정 2007．1．19＞
（5）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•용적률•건축연면적•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．
［본조신설 2001．1．29］

제 11 조의 4 (부담금의 부과•징수 및 납부기한 등) (1)부담금은 제 11 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•도지사가 부과•징수하되,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제 11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.
(2)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•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 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 다.
(3)시•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 부기한의 경과후 10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 촉장 발부일부터 10 일로 한다.
(4)시•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부담금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.
(5)시•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(6)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둥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둥을 받은 날 둥 부담금의 부과.징수의 방 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1.1.29]

제11조의6(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) (1)징수된 부담금의 100 분의 40 은 「교통시설 특별회계법」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. <개정 2007.1.19>
(2)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 분의 60 은 제 11 조의 7 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 수한 시•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.
(3)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.19>

1.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
2.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 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
3. 「도로법」에 의한 특별시•광역시도, 지방도 및 시•군•구도중 시•도지사가 광 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 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. 이 경우 시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.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 분의 10 의 범 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1.1.29]

제11조의7(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) (1)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•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 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 계를 설치할 수 있다.
(2)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
2.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사업비
3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
(3)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•도 의 조례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1.1.29]

## 지방채상환기금

## 1. 결산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| 기금명 | 전년도말 | 당해연도 증감액 |  |  | 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당해연도말

## 2. 검토의견

○ 2005년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1종 1,751 억 1,174 만원의 기금을 운 용하고 있으며, 우리위원회 소관으로는 2000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 호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소관의 지방채상환기금이 있 음.

○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2,300만원에서 당 년도 이자발생액 9백만원이 수납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5억 3,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음
※ 기금 5억원은 2004년 9월에 조성되었음

○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 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시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액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 안이 필요함.
[참고자료 1]

## 자치단체별 지방채현황

(단위:억원)


주) 본 자료는 행정자치부 자료로 시군구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며, 2005년도 결산과는 차이가 있음.
[참고자료 2]

## 지방자치단체 한도액현항

(단위 : 억원)

| 구 | 분 | 한 도 액 |  | 구 | 분 | 한 도 엑 | 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 | 2006 | 2007 |  |  | 2006 | 2007 |
| 서울시 | 총 계 | 14,202 | 14,425 | 강원도 | 총 계 | 2,849 | 2,976 |
|  | 본 청 | 10,371 | 10,951 |  | 본 청 | 825 | 848 |
|  | 기초계 | 3,831 | 3,474 |  | 기초계 | 2,024 | 2,128 |
| 부산시 | 총 계 | 1,775 | 1,835 | 충북도 | 총 계 | 2,201 | 2,619 |
|  | 본 청 | 836 | 912 |  | 본 청 | 675 | 768 |
|  | 기초계 | 939 | 923 |  | 기초계 | 1,526 | 1,851 |
| 대구시 | 총 계 | 1,130 | 1,244 | 충남도 | 총 계 | 3,372 | 3,813 |
|  | 본 청 | 481 | 543 |  | 본 청 | 1,113 | 1,055 |
|  | 기초계 | 649 | 701 |  | 기초계 | 2,259 | 2,758 |
| 인천시 | 총 계 | 2,678 | 2,986 | 전북도 | 총 계 | 2,600 | 3,182 |
|  | 본 청 | 1,884 | 2,185 |  | 본 청 | 734 | 743 |
|  | 기초계 | 794 | 801 |  | 기초계 | 1,866 | 2,439 |
| 광주시 | 총 계 | 694 | 932 | 전남도 | 총 계 | 3,633 | 4,209 |
|  | 본 청 | 330 | 586 |  | 본 청 | 918 | 857 |
|  | 기초계 | 364 | 346 |  | 기초계 | 2,715 | 3,352 |
| 대전시 | 총 계 | 720 | 730 | 경붂도 | 총 계 | 4,107 | 4,983 |
|  | 본 청 | 308 | 335 |  | 본 청 | 1,108 | 1,254 |
|  | 기초계 | 412 | 395 |  | 기초계 | 2,999 | 3,729 |
| 울산시 | 총 계 | 815 | 889 | 경남도 | 총 계 | 4,379 | 5,033 |
|  | 본 청 | 409 | 447 |  | 본 청 | 1,384 | 1,544 |
|  | 기초계 | 406 | 442 |  | 기초계 | 2,995 | 3,489 |
| 경기도 | 총 계 | 12,607 | 13,060 | 제주도 | 총 계 | 887 | 1,087 |
|  | 본 청 | 5,458 | 5,461 |  | 본 청 | 476 | 443 |
|  | 기초계 | 7,149 | 7,599 |  | 기초계 | 411 | 644 |

※ '06년 5 조 8,649 억원, ' 07 년 6 조 4,003 억원으로 5,354 억원 증가(재원증가 등)

